

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	1995. 6. 12	조례 제 1372호
개정	1995. 12. 28	조례 제 1406호
전면 개정	1996. 7. 18	조례 제 1496호
개정	1997. 1. 1	조례 제 1533호
개정	1998. 3. 6	조례 제 1570호
개정	1998. 9. 15	조례 제 1583호
개정	1999. 9. 8	조례 제 1654호
개정	2001. 7. 24	조례 제 1742호
개정	2003. 1. 10	조례 제 1805호
개정	2003. 6. 10	조례 제 1819호
전면 개정	2004. 1. 8	조례 제 1854호
일부 개정	2005. 5. 10	조례 제 1929호
일부 개정	2006. 2. 24	조례 제 1988호
일부 개정	2007. 9. 20	조례 제 2060호
일부 개정	2009. 8. 3	조례 제 2202호
일부 개정	2010. 1. 8	조례 제 2240호
일부 개정	2010. 12. 31	조례 제 2297호
전부 개정	2012. 10. 12	조례 제 2421호
일부 개정	2013. 9. 30	조례 제 2498호
일부 개정	2014. 4. 30	조례 제 2539호(제명개정)
일부 개정	2014. 11. 14	조례 제 2574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, 제명개정)
일부 개정	2014. 11. 14	조례 제 2579호
일부 개정	2016. 1. 6	조례 제 2700호
일부 개정	2017. 3. 6	조례 제 2802호(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)
일부 개정	2017. 5. 18	조례 제 2819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, 평생교육원 시설물의 유지관리,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·보존과 도서관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양시평생교육원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1. 14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용료 및 수강료”란 시설사용, 교육수강,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
2. “도서관자료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”란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한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.

제3조(시설의 종류) 안양시 평생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에 만안평생교

육센터, 동안평생교육센터, 만안노인복지회관, 동안노인복지회관, 석수도서관, 만안도서관, 삼덕도서관, 박달도서관, 평촌도서관, 관양도서관, 호계도서관, 비산도서관, 어린이도서관, 별말도서관의 시설을 둔다. <개정 2014. 4. 30, 2014. 11. 14, 2017. 5. 18>

제4조(업무) ① 안양시평생교육원장(이하 “교육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4. 11. 14>

1. 평생교육센터: 시민의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, 시간제 보육사업, 작품발표 및 전시
2. 노인복지회관: 노인 정서함양과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 운영 및 편의 시설 제공
3. 시립도서관: 자료의 구입 및 수집정리, 자료의 보관·열람 및 대출, 시설의 유지관리
4. 교육원내 시설물, 동안청소년수련관, 보훈회관의 시설물 보수·정비

②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시민의 능력계발 및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원 내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4>

제5조(변상)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
제2장 평생교육센터

제6조(교육 및 강사위촉)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기능, 취미, 교양교육 등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강사의 임기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위촉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강사 위촉 해제)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삭제 <2014. 11. 14>
2.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
3.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
4. 그 밖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

[제목개정 2014. 11. 14]

제8조(이용자 범위)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1. 14>

1. 평생교육센터: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우선하고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
2. 노인복지회관: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

제9조(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4>

1.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
2. 단체행동을 선동한 사람
3. 음주를 하였거나 소란행위를 한 사람
4.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

제10조(사용료 등 징수) ① 시장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·회의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평생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시설사용료(이·미용료, 보육료, 식대 등을 포함한다) 및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라 사전에 부과·징수한다.

제11조(사용료 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
2. 시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위탁기관 등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제12조(수강료 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6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유족 포함)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
5. 결혼이민자

6.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
7. 「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

제13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3장 도서관

제14조(기능) 시립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은 정보·문화·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시민에게 이용 제공
2.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·열람·대출
3. 강연회, 전시회, 독서회,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
4.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

제15조 삭제 <2013. 9. 30>

제16조(시설 및 자료이용)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,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.

② 자료복사의 경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7조(자료의 변상책임)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해야 하고,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중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이용제한)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19조(위원회 구성)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시립도서관

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4. 11. 14>

③ 위원은 석수도서관장, 평촌도서관장과 문화계·교육계의 전문가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0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1. 시립도서관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2. 도서·자료의 수집, 열람 및 대출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
3.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등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

제2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열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
제23조(수당)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4조(관외대출)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서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.

제25조(위탁자료)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.

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

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.

제26조(기증도서 관리)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올린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제27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.

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1. 6>

제2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12. 10. 12 조례 제2421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2호 중 “여성회관”을 “평생교육센터”로 한다.

별표 2의 명칭란 중 “만안여성회관”을 “만안평생교육센터”로 하고 “동안여성회관”을 “동안평생교육센터”로 한다.

부칙 <2013. 9. 30 조례 제249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4. 30 조례 제253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1. 14 조례 제2574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중 “평생학습원”을 “평생교육원”으로 하고, 제1조 중 “평생학습원”을 “평생교육원”으로 하고, 제3조 중 “학습원”을 “교육원”으로 하며, 제4조제1항 중 “학습원장”을 “교육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항제4호 중 “학습원”을 “교육

원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학습원”을 “교육원”으로 하며, 제19조제2항 중 “학습원장”을 “교육원장”으로 한다.

⑧ 부터 ⑮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11. 14 조례 제257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. 6 조례 제270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3. 6 조례 제2802호,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
지원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

④ 생략

부칙 <2017. 5. 18 조례 제2819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
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⑰ 까지 생략

⑱ 「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만안도서관”을 “만안도서관, 삼덕도서관”으로 하고, “평촌도서관”을
“평촌도서관, 관양도서관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6. 1. 6>

시설사용료 및 수강료

1. 평생교육센터

구분	기준	사용료 등		비고
	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	일반	
기술교육 취미교육	과목당1주수강시간 · 3시간 이하 · 4~5시간 · 6~8시간 · 8시간 이상	무료 무료 무료 무료	월 12,000원 월 15,000원 월 18,000원 월 24,000원	
강 당 소 강 당 다목적실	1회 / 2시간 (기준시간)	무료 무료 무료	< 기본시설 > -평 일 50,000원 -토요일·공휴일 60,000원 < 부대시설 > -냉난방비 20,000원	○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사용료 가산 -기본시설 : 초과 1시간당 25,000원 가산 * 토요일·공휴일은 30,000원 가산 -부대시설 : 초과 1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% 가산 ○부가가치세 별도
전 시 실	1회 / 1일	무료	20,000원	○부가가치세 별도
보 육 료	1명 / 1개월	경기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		
식 당	1회 / 2시간	무료	20,000원	○기준초과 사용 시 초과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징수 ○부가가치세 별도

2. 노인복지회관

구분	기준	사용료 등		비고
	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	일반	
이·미용료	커트 퍼머	무료 무료	1,500원 4,000원	
경로식당 (중식비)	1식	무료	1,000원	
목욕탕	1회	무료	무료	
강 당	1회/2시간	무료	20,000원	○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징수 ○부가가치세 별도
취미교육	1명/1개월	무료	무료	

※ 공휴일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.

※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”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.

[별표 2]

도서자료 복사사용료

	규격	기준	금액(원)	비고
전자복사기 (자료복사료)	B5	1매	30	
	A4	1매	40	
	B4	1매	50	
컴퓨터프린터기 (인쇄료)	A4	1매	50	

